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7.12.6(수) / 총1매(본문1)</b>
<b>담당부서</b>	<b>행복택지기획과</b>	<b>담당자</b> ·과장 구현상, 사무관 하태아, 원일웅 ·☎ (044) 201-4526, 4522
<b>보도일시</b>		<b>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

## **‘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, 벌써 투기장화, 땅값 들썩’ 보도 관련**

-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지 분할·합병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투기행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공람일에 항공 사진을 촬영하였고, 사업지구 주요 지역에 행위제한 안내 간판 설치 및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사업지구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,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되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### < 관련 보도내용 (서울경제 12.5) >

- ◆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, 벌써 투지장화 “땅값 들썩”
  -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공개되자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땅값이 치솟는 등 수도권 토지시장이 들끓고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행복택지기획과 하태아 사무관(☎ 044-201-45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